붙임1.

용인 드마크 데시앙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Ⅰ 공급개요 및 일정

▌공급위치 및 건축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 공급개요 : 지하3층~지상37층 8개동 총 1,308세대(일반분양 1,0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개요

구분	주택형	공급세대수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분양	51A	31	51.9552	26.3016	78.2568
	51B	32	51.9512	26.4233	78.3745
	59A	390	59.9704	25.5826	85.5530
	59B	377	59.9579	25.3706	85.3285
	74	158	74.9539	29.7201	104.6740
	84	81	84.9636	29.0132	113.9768
	계	1,069			

▌예상분양가

- 입주자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

▌분양일정

구분	일자(예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1.03.18.(목)	
주택전시관 오픈	2021.03.19.(금)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1.03.29.(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
당첨자발표(동호수발표)	2021.04.07.(수)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계약체결	2021.04.19.(월) ~2021.04.23.(금)	용인 드마크 데시앙 견본주택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용인 드마크 데시앙’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인 이상 신청 / 중복 당첨 시 당첨은 무효처리 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1 용인 드마크 데시앙 견본주택
- 전화번호 : 1577-0830

Ⅱ 특별공급 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18.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1.03.18 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Ⅲ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가 특별공급 신청일(2021.03.29.(월) 예정)에 인터넷(청약홈 홈페이지)을 통하여 반드시 청약 접수 하여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서 재당첨제한은 7년간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4.07.예정)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특별공급간(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중복신청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및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로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동일세대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신청방법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 접수 원칙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시간 08:00~17:30

▌견본주택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 구비서류 미비시 방문신청이 불가합니다.(접수시간 10:00~14:00)**
  (일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18. 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내용
필수	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서약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 특별공급 신청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 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등본상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출입국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해당자	기관장의 추천서	· 해당기관 → 사업주체 추천자 별도 통보할 경우 불필요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추가	·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본인 확인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분(추가 제출)
- 신청자격 및 자격입증서류

: 청약 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 주민등록표등본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등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Ⅴ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_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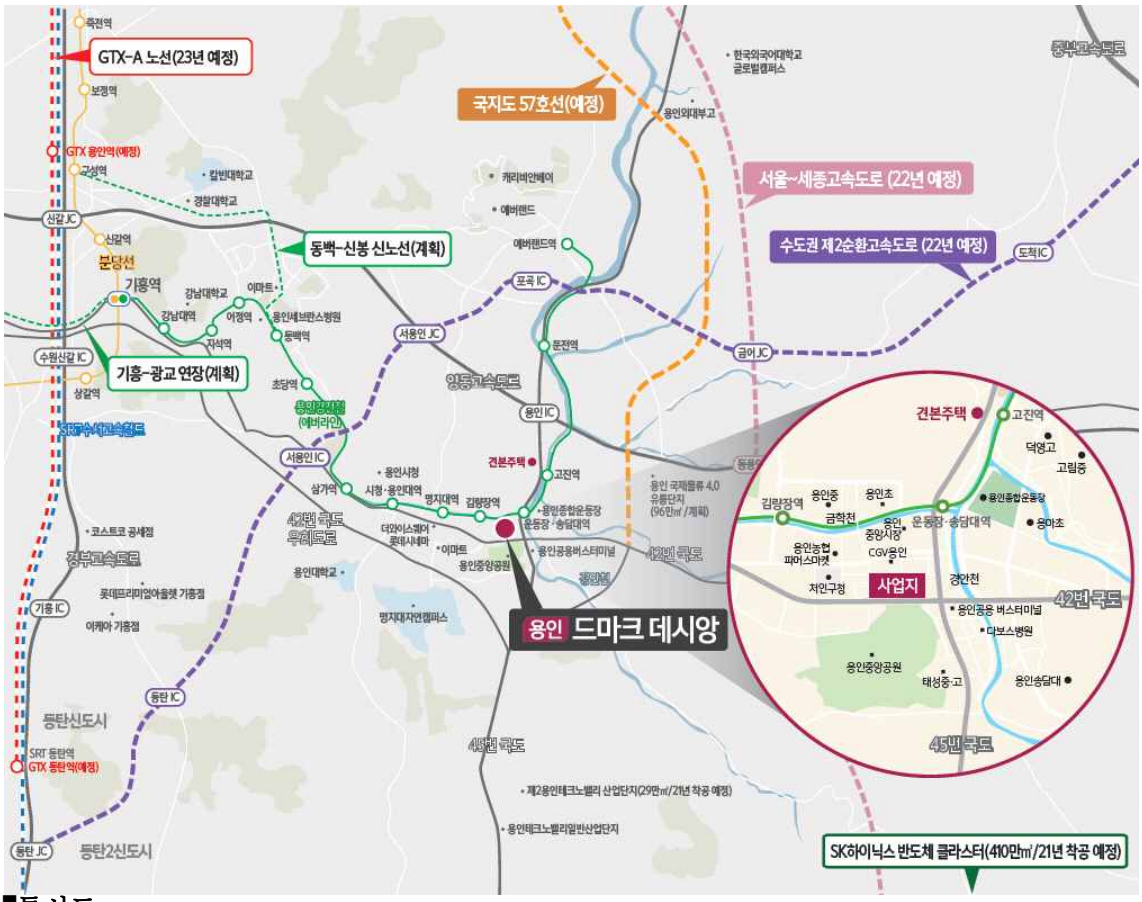

▌투시도

※ 상기 투시도는 인 · 허가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 : ㈜태영건설